

- 한강매점운영 기한연장에 관한 청원 -

# 심 사 보 고 서

접수번호	73
------	----

2017년 9월 1일  
환경수자원위원회

## 1. 심 사 경 과

- 가. 청 원 인 : 서울시 광진구 정남수 외 437명
- 나. 소개의원 : 김광수(국민의당, 노원5, 환경수자원위원회)
- 다. 접수일자 : 2017년 8월 17일
- 라. 회부일자 : 2017년 8월 21일
- 마. 상정일자 : 제276회 서울특별시의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17년 9월 1일 상정의결)

## 2. 청 원 요 지

- 본 청원은 2009년부터 한강공원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여의도, 뚝섬, 난지, 반포지역의 11개소 매점에 대해 운영기한을 연장을 요구하는 것으로 불공정한 계약조건 시정, 투자비용 회수기간을 고려한 사업기간 연장, 고용승계 보장 등 현재 매점운영자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할 것을 요청하는 것임.

### 3. 청원 소개의원 요지 (김광수 의원)

- 한강매점은 매점은 총 29개소로 2008년부터 (주)코리아세븐·(주)한강체인본부 컨소시엄(14개소), 대한상이군경회(4개소), 한국미니스톱(주)·(주)한드림 24 컨소시엄(11개소)이 각각 민간투자방식으로 조성하여 운영하였는데, 이는 서울시가 소상공인들의 영세성을 고려하여 컨소시엄의 형태로 기존의 노점상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음.
- (주)한드림24에서 운영하고 있는 매점(11개소)에는 현재 165명(65세이상의 고령자 74명, 장애인 8명 포함)의 근로자가 고용되어 일하고 있고, 기부채납 후 공개경쟁입찰을 할 경우 사회적 경제적으로 도움이 절실한 근로자들의 고용 승계가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이며, 이는 영세상인의 보호라는 서울시의 정책과도 배치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초기 투자비용 68억원이외에 추가로 투자된 비용 32억 4천만원 그중에서도 2016년도부터 투자된 20억원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기간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4. 한강사업본부 의견

### 가. 한강공원 매점 계약기간 연장 요구

- (주)한드림24가 운영하는 매점 11개소는 2009년부터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매점을 설치하고 8년동안 운영 후 서울시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BOT 방식으로 추진하여, 공모를 통해 ‘한강특화사업공원 매점운영 사업계약서’를 체결하였음
- 「한강특화사업공원 매점운영 사업계약」(’09.11.3.)에 의하면, 매점시설물(제반 공급시설 포함)의 소유권은 사업기간 만료시 현재 상태로 서울시에 귀속되며, 매점의 유지관리 비용은 미니스톱(주)·(주)한드림24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

#### ▣ 한강특화사업공원 매점운영 사업계약서

제12조(시설물의 귀속 및 관리) ① 본 시설목적물(매점에 속하는 제반 공급시설을 포함한 다)은 제3조에서 정한 사업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제17조에서 정한 계약이 해지된 때, 제23조에서 정한 제소전화해가 성립되지 않아 무효인 때에는 현재 상태로 “갑”(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에게 귀속되며 “을[(주)한드림이십사, 한국미니스톱(주)]”은 시설물의 반환과 관련하여 계약의 목적물인 매점시설물에 대하여 사업계약시 “갑”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매점의 유지관리와 “갑”이 시설물을 추가 설치토록 지시한 경우 “을”은 시설물 설치 준비이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제비용은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1) 2010년부터 2017년5월까지 추가로 투입된 투자금은 32억4천 만원으로 투자비용이 회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년 11월2일이 되면 매점운영권을 반납해야하는 처지에 있으니 매점운영기간을 연장요청**

- 당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용역 보고서(한강공원 매점 재배치 및 운영방안, 2007년)에 의하면, 8년의 운영기간은 투자비 회수, 운영비, 적정이윤 등 순수 현금흐름에 따른 수익성 분석결과이며, 한강시민공원이 갖고 있는 입지특성과 사업자에 대한 상당한 광고 및 경제적

효과 등 부수적인 수익은 포함하지 않았음

- 또한 계약기간동안 기대한 수익을 얻지 못하였더라도, 민간자본으로 건설되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 사회기반 시설을 만들 때 손실 일부를 보전해주는 최소수입보장(MRG) 또는 계약기간연장 약정 등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사실이 없음
- 청원인이 주장하는 서울시의 지시로 시설물을 추가설치 하는 경우에도 청원인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투자비 증가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매점시설물에 대한 일반적인 유지·보수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음
- 또한 (주)한드림24가 제출한 회계자료에 따르면 '09년부터 '17년 상반기까지 총매출액 1,221억원으로 판매관리비 501억원을 제외하더라도 당기순이익 42억원에 달하는 매우 수익성 높은 사업을 영위하였음.

【 한드림24 재무제표 요약 】

○ 손익계산서 요약

(단위 :백만원)

손익계산서	합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매출액	122,181	3,147	12,423	12,556	13,955	13,563	16,502	18,195	21,109	10,731
매출원가	68,348	1,785	6,566	6,817	7,827	7,892	9,423	10,359	11,701	5,977
매출총이익	53,833	1,362	5,857	5,739	6,128	5,671	7,078	7,836	9,408	4,754
판매관리비	50,144	1,332	5,715	6,027	5,998	5,266	6,450	6,379	7,447	5,531
영업이익	3,689	30	142	-288	130	405	628	1,457	1,961	-777
영업외수익	2,717	34	359	589	216	208	269	286	315	439
영업외비용	1,099	3	438	231	203	87	58	36	27	17
세전이익	5,306	62	64	71	143	525	839	1,708	2,249	-355
법인세 등	1,154	9	7	12	17	112	168	356	473	-
당기순이익	4,152	53	56	59	126	413	672	1,352	1,776	-355

(2) (주)한드림24 운영매점 11개소에 165명(65세이상 74명, 장애인 8명)의 근로자가 공개경쟁 입찰을 할 경우 고용승계가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 한강 공원 환경 개선을 위해 현대화된 매점 정비코자 기존 임시매점 운영자에 대한 생계보호대책으로 사업공모 시, 제안서평가 전체 배점 1,000점 중 200점 가점 부여하여 매점운영사업자로 선정, 「한강특화 사업공원 매점운영 사업계약」 을 2009.11.3. 체결하였음
- 서울시는 사업계약」 제7조(매점운영관련)에 주주대상자를 한강 임시매점 계약자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고, 기존 임시매점운영자에게 희망자에 한하여 8년간 고용보장토록 하였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에 따르면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는 일반경쟁 입찰이 원칙으로 제한입찰,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없으며, 민간자본 투자를 통한 매점 재설치 및 운영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청원인에게 우선권을 인정해야 하는 법적 근거는 없음

## 나. 종합의견

### 한강공원 매점 계약기간 연장 청원 수용불가

- 현재 한강공원 매점의 경우 (주)한드림24의 입장에서 기간연장 요청을 하거나, 서울시의 입장에서 기간연장 요청에 응할 만한 계약상, 법률상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 「한강공원 매점운영 사업계약」에서 매점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계약서 제12조제1항·제3항), 청원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본 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청원인이 주장하는 비용을 부담하였더라도 이유없이 비용을 부담하였다고 볼 수 없음
- 또한 계약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소 전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계약기간 만료시 매점시설물에 대한 일체의 비용청구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명시한바 있음(화해조서 제1항·제2항)
- 「한강공원 매점운영 사업계약서」, 「제소전 화해조서」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주)한드림24(대표: 정남수)에서 제출한 한강공원 매점 운영의 계약연장에 관한 청원은 수용 불가함.

## 5.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선희)

### 가. 청원의 개요

- 본 청원은 2009년부터 한강공원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여의도, 뚝섬, 난지, 반포지역의 11개소 매점에 대해 불공정한 계약조건 시정, 투자비용 회수기간을 고려한 사업기간 연장, 고용승계 보장 등 현재 매점운영자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도록 요청하는 것임.

### 나. 한강매점현황

- 한강공원 매점은 2008년부터 민간투자사업을 유치하여 매점을 설치하고 일정기간(8년) 동안 무상사용한 후, 서울시에 소유권을 이전받는 방식(BOT)<sup>1)</sup>으로 추진하여,
- 현재 29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표1과 같이 계약만료된 광나루 등 6지역 12개소는 올해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17.4.13)하고, 잠실지역의 4개소는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와 수의계약을 체결('17.2.16)하였으며, (주)코리아세븐·한강체인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광나루, 망원지역의 2개소는 2018년에 계약이 만료되어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임.

〈표 1〉 한강매점 현황

구 분	계	광나루	잠원	양화	강서	망원	이촌	잠실	여의도	뚝섬	난지	반포	광나루 망원
개소	29	1	3	4	1	1	2	4	4	3	2	2	2
사업자	-	4개사업자 <small>납찰후 영업중</small> 10개소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4개)	한국미니스톱(주)·(주)한드립 24 권소시엄(11개)				(주)코리아세 븐·(주)한강 체인본부
설치시기	-	'08년(12개)						'08년(4)	'09년				'11년

1) BOT (Build-Operate-Transfer) : 민간투자사업의 한 형태로 사업시행자가 비용을 조달하여 시설물을 설치한 후 일정기간동안 무상운영한 후 국가, 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방식

귀속시기		'16년 12월 귀속완료(12개)	'16년2월 .5월 (4)	'17년 11월	'18년8월
------	--	--------------------	----------------------	----------	--------

- 또한, 여의도, 뚝섬, 난지, 반포지역의 11개소는 한국미니스톱(주)·(주)한드림24 컨소시엄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 사업기간이 만료되는 매점을 시작으로 서울시에 귀속하도록 되어 있어 금년도에 매점에 대한 소유권이 서울시로 이전될 예정임.

## 다. 검토의견

### (1) 한강공원 매점 계약기간 연장 요구

- 현재 청원인이 운영하고 있는 매점은 고급휴게형 매점 9개소(뚝섬 3, 반포 2, 여의도 3, 난지 1)와 일반휴게형 매점 2개소(여의도 1, 난지 1)를 합한 총 11개소이며 11월 2일자로 사업기간이 종료될 예정임.
- 한강사업본부와 청원인이 체결한 「한강특화사업공원 매점운영 사업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제3조에 따르면 사업기간은 8년으로,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매점은 한강사업본부로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한강특화사업공원 매점운영 사업계약서

제12조(시설물의 귀속 및 관리) ① 본 시설목적물(매점에 속하는 제반 공급시설을 포함한다)은 제3조에서 정한 사업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제17조에서 정한 계약이 해지된 때, 제23조에서 정한 제소전화해가 성립되지 않아 무효인 때에는 현재 상태로 “갑”(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에게 귀속되며 “을[(주)한드림이십사, 한국미니스톱(주)]”은 시설물의 반환과 관련하여 계약의 목적물인 매점시설물에 대하여 사업계약시 “갑”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 청원인은 한강사업본부의 시설물 유지관리와 추가설치요구로 인해 계약당시의 투자비(66억 9천3백만원)보다 32억 4천3백만원이 증가



(99억 3천6백만원)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사업기간을 연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표 2〉 계약당시 한강공원 매점 향후 투자계획서

(단위 : 백만원)

구분	금액	한국미니스톱(주)	한드림
투자이행완료금액 (’09. 10월 기준)	6,230	3,347	2,883
향후 투자계획	463	-	463
사업투자금액 총계	6,693	3,347	3,346

- 청원인의 주장에 따르면, 추가비용 32억 4천3백만원에는 2010년 ~ 2016년까지 유지보수 비용 약 13억원, 매점시설물 안전조치 이행 요청(’16.8.23)에 따라 약 19억원이 소요되었다고 함.
- 계약서에는 한강사업본부가 시설물을 추가 설치토록 지시한 경우, “을”은 시설물 설치 준비이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제비용은 “을”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투자비 증가에 따른 사업기간연장에 관한 조항은 없음.

※ 한강특화사업공원 매점운영 사업계약서

제12조(시설물의 귀속 및 관리) ①~② (생략)

③ 매점의 유지관리와 “갑”이 시설물을 추가 설치토록 지시한 경우 “을”은 시설물 설치 준비이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제비용은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 청원인은 투자비용을 반영한 사업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한강사업본부는 투자금액 회수내역을 분석하여 표 3과 같이 미 회수금은 2억 2천7백만원으로 나타나 사업기간 연장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음. 다만, 이 결과는 한강사업본부에서 검토한 것으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보다 면밀하고 객관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기간

연장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표 3〉 투자금액의 회수내역 분석

(단위 : 백만원)

연 도	투 자 금 액			회 수 금 액			미회수액
	본부 투자금	투자 차입금	투자금 총액	본부 회수금	차입금 상환	회수금 총액	
'17.6.31. 현재	5,564	-	5,564	5,337	-	5,337	227

- 또한, 지난 “한강공원 간이매점 운영의 계약연장에 관한 청원” 검토 보고서에서도 명시한 바와 같이 세빛섬, 여의도 시민요트나루, 한강 수상택시의 협약서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사업기간(무상사용기간) 종료 후에도 기존 사업시행자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계약서 제16조를 들어 계약의 수정을 요구할 경우 이에 대한 검토는 필요할 것임.

※ 한강특화사업공원 매점운영 사업계약서

제16조(계약의 수정) 중대한 사유로 인해 본 계약의 수정이 필요할 경우 “갑”과 “을”의 협의 하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수 있다.

(2) 한강 매점 내 근로자 고용유지 필요

- 청원인은 기존 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유지를 위해 한강매점 운영자 선정시 기존 사업자에게 우선권 인정을 원하고 있으나, 한강매점을 비롯한 한강공원 이용시설의 사용수익허가 대상자 선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3조에 따라 일반경쟁 입찰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어, 현행 법률상에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3조(위탁운영 등) ② 제1항에 따른 공원이용시설의 수탁자 또는 사용·수익 허가 대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 선정은 일반경쟁 입찰에 의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라. 결론

- 청원인이 제출한 청원서, 「한강특화사업공원 매점운영 사업계약서」, 한강사업본부가 추진한 다른 민간투자사업 협약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청원인이 주장하는 사업기간연장은 투자비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계약서 수정 등의 방법을 통해 기간연장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기존 사업자인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수의계약)와 (주)코리아세븐·한강체인본부(기간연장)의 사례를 통한 형평성 문제도 검토가 필요함.
  - 청원인이 운영 중인 매점이 11월 2일자로 서울시에 귀속될 경우 매점의 사용수익허가를 위한 신규사업자 선정시, ‘일반경쟁’ 입찰 방식 이외의 ‘수의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등은 법령에 위반되므로 수용할 수 없음.

# 관 계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③~⑤ (생략)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3조(위탁운영 등)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설치한 공원이용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원이용시설의 수탁자 또는 사용·수익 허가 대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 선정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관련 사업계약서 및 협약서

### □ 플로팅아일랜드 조성 및 운영사업협약서(2008. 6. 9)

제49조(기간만료로 인한 계약의 종료) ① 본 협약은 중도해지되지 않는 한 소유·운영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종료되고, 이 경우 사업시행자의 소유·운영권은 소멸하며 한강사업본부는 관련법규에 따라 소유·운영권을 말소한다.

② 본 협약이 소유·운영기간의 만료로 종료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는 소유·운영기간의 만료일 3년전, 1년전, 6개월 전에 각 1회씩 한강사업본부와 공동으로 본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실시한다.
2. 제1호에 의한 점검결과 본 시설물의 정상적인 기능유지를 위하여 수리 또는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유·운영기간 만료 전까지 사업시행자의 비용으로 그 수리 또는 보수를 실시한다.

③ 한강사업본부는 사업시행자가 소유·운영기간의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재운영신청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본 시설물을 관리·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유상사용을 조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조건은 한강사업본부와 사업시행자의 별도계약으로 정한다.

### □ 여의도 한강공원 요트마리나 조성 및 운영사업협약서(2010.12.30)

제60조(기간만료로 인한 협약의 종료) ① 본 협약은 중도해지되지 않는 한 소유·운영권 설정기간의 만료에 의해 종료되고, 사업시행자의 소유·운영권은 소멸한다.

② 본 협약이 소유·운영기간의 만료로 종료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는 소유·운영기간의 만료일 3년전, 1년전, 6개월 전에 각 1회씩 한강사업본부와 공동으로 본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실시한다.
2. 제1호에 의한 점검결과 본 시설물의 정상적인 기능유지를 위하여 수리 또는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유·운영기간 만료 전까지 사업시행자의 비용으로 그 수리 또는 보수를 실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계한 사업시설을 한강사업본부에서 정상적으로 유지관리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설 등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고, 자료를 제공하며 필요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④ 한강사업본부는 사업시행자가 소유·운영기간의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재운영신청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본 시설물을 관리·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유상사용을 조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조건은 한강사업본부와 사업시행자의 별도계약으로 정한다.

□ **한강수상관광택시 운영사업 협약서(2008.10.24)**

제3조(사업기간) 사업기간은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의 도선업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20년으로 한다. 다만, 사업기간만료 전에 “갑”이 제시하는 일반적인 추가 조건을 “을”이 충족 및 이행할 경우 “갑”은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한강특화사업공원 매점운영 사업계약서(2009. 11.3)**

**\_(주)한국미니스톱 · (주)한드림24**

제3조(사업기간) ① 사업기간은 2009년 11월 3일부터 8년(2017년 11월2일)으로 한다. 다만, 하천법 규정에 의거 “을”은 매년 하천점용허가만료일 1개월전에 “갑”에게 연장 신청을 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6. 질의 및 답변 :**

(질의) 청원인이 주장하는 사업기간 연장이 가능하나?

(답변) 투자비 분석을 통해 사업기간 연장여부를 객관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7. 토론 요지 : 없 음**

**8. 심사 결과 :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11. 의견서 : 별 첨**

# 의견서

- 청원명 : 한강공원 간이매점 운영의 계약연장에 관한 청원
- 처리하여야 할 기관 :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 처리결과 :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함
- 채택의견 :
  - 청원인이 주장하는 사업기간연장은 투자비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계약서 수정 등의 방법을 통해 기간연장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기존 사업자인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수의계약)와 (주)코리아세븐·한강체인본부(기간연장)의 사례를 통한 형평성 문제도 검토가 필요함.
  - 청원인이 운영 중인 매점이 11월 2일자로 서울시에 귀속될 경우, 매점의 사용·수익허가를 위한 사업자 선정 시 '수의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등은 관련법령에 위반되므로 수용할 수 없음.



## 청 원 요 지 서

접수번호	73	접수연월일	2017. 8.17
청원인	주소	서울시 광진구	
	성명	정남수 외 437명	
소개의원	김광수(노원)	소속위원회	환경수자원
건명	한강매점운영 기한연장에 관한 청원		
소관위원회	환경수자원		
<p>○ <b>청원인과 청원인이 대표로 있는 (주)한드립24는 한국미니스톱과 컨소시엄으로 한강공원 4개지구에서 11개의 간이매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 11월2일 매점운영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음</b>  <b>이 매점 초기 설치 투자금은 68억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매점운영기간을 8년으로 설정하였으나 2010년부터 2017년 5월까지 추가로 투입된 투자금이 32억 4천만원으로 투자비용이 회수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년 11월 2일이 되면 매점운영권을 반납해야하는 처지에 있으므로 이에 매점운영기한을 연장해 줄것을 청원함</b></p>			